정기적금 상품설명서



-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◆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■ **상 품 명** : 정기적금

■ **상품특징** : 매월 정해진 금액을 예치하여 일정기간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.

2 기래 조건

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수령하시는 통상이나 증서 또는 비내면 재널의 계솨상세소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							
구	분			내 용			
가입대상		• 인터넷뱅킹 가입고객					
가입금액		• 1만원 이상					
가입기간		• 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(월 단위)					
이자지급시기		• 만기 일시지급식 : 만기(후)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					
예금자 보호여부 [해당]		이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5천만원까지"(본 상호저축은행 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					
지급제한사항		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: 가능 (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의 90% 이내로 가능)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					
	기본	•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(금리기준일: 2025.03.24.일, 세전, 연이율)					
		계약기간	6개월	12개월	24개월	36개월	
		기본이자율	3.00%	3.80%	3.90%	4.00%	
이자율	우대	•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 조건별 우대이율 적용 • 적용조건 : 해당사항 없음					
	만기 후	•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					
		경과기간		이 율			
		1개월이니	당초	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			
		1개월 초고	ŀ	보통예금 이율			

구 분 내용 • 입금금액마다 입금월부터 만기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 (워미만 절사) [입금건별 이자계산 산식] 입금금액 × 약정이율 × 예치월수/12 만기일 3회차 입금금액 x 이자을 x 예치월수 / 12 만기이자 입금금액 x 이자을 x 예치월수 / 12 산출근거 입금금액 x 이자을 x 예치월수 / 12 : 입금금액 x 이자을 x 예치월수 / 12 ※ 입금금액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, ①만기지급금에서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, ②만기일이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. ① 입금지연이자 = (총지연일수- 총선납일수)/365 x 입금지연이율[=약정이율+2%] x월입금금액 ②월평균지연일수 = (총지연일수- 총선납일수)/계약월수 계약해지방법 •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 해지가능. •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(15.4%*)을 공제하여 지급 적용세율 * 이자소득의 14% + 이자소득세의 10%(1.4%)를 징수 •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만기의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(타행포함)로 자동해지 이체할 수 있습니다. • 1개월 미만 : 계약일의 보통예금 이율 범위내 적용 • 1개월 이상 : 약정이율 × 차등률 × (경과월수 / 계약월수) [단, 최저금리 : 약정이율 × 50%] 예치기간 이 율 비고 1개월 미만 보통예금 이율 연 0.1% 1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 기본이율 × 50% 6개월 이상 ~ 12개월 미만 기본이율 × 55% 약정이율의 50% 12개월 이상 ~ 기본이율 × 65% • 계산방법<예시> 중도해지 약정이율 이율 및 계산방법 약정이율x50% 기본이율 x 50% 기본이율 x 70% 기본이율 x 80% 기본이율 x 90% 0.1% 계약일 1개월 6개월 9개월 11개월 만기일 (예:12개월) ※ 가입기간이 "1개월 미만"으로 중도해지 시에는 약정이율의 50%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, 위 그림은 중도해지이율을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, 실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이 아닐 수 있습니다. •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 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위법계약 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해지권 •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

구 분	내 용		
세제혜택	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가입대상: 만65세 이상의 거주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, 독립유 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보 장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※ '20.1.1. 이후 가입(자동재예치) 분부터 「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)」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		
입금지연이자	• 정기적금의 월부금은 매월 일정한 날(계약일)에 납입하도록 되어있으나, 예금주의 사정에 의하여 납일기일을 경과하여 납입한 경우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를 징수 • 지연이자는 해지시 저축은행에서 정한 입금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이자에서 차감합니다. 다만, 지연이자 징수를 원하지 않을시 만기일을 이연하여 해지할 경우 지연이자의 징수를 면제합니다. [입금지연이자율: 기본이자율 +2.0%]		
만기 앞당김 해지	• 모든 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 앞당김 지급 가능 ※ 만기 앞당김이자를 만기지급이자에서 공제 하고 지급 합니다. [만기앞당김이자율: 기본이자율 + 2.0%]		
자동재예치	• 신청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정기예금으로, 재예치일 당시 고시된 정기예금 금리로 재예치 되며,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등의 계약조건은 자동만기연장 신청시 신청한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※ 자동재예치 제외(불가) 사유 : 저축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 된 경우, 질권 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, 재예치 후 계약 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		
연계·제휴 서비스	• 해당사항 없음		

3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등

•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: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 (031-566-33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nybank.co.kr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 번없이 133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4 유의사항

- ·이 설명서는 [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] 제19조제1항,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,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, 상당일 이후 가입금액,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.
- <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>

◉ 금융용어 설명

용 어	내 용		
압류	국가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,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됨		
가압류	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		
질권설정	자기 또는 제삼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,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일		
경과기간	(해당 시간을) 완전히 지나간 기간 * (예시)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		

※ 출처 :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, 금융감독원 알기쉬운 금융용어